

###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(개정 산안법)

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제57조(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재해 발생보고 * 재발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</li> <li>- 사망 시: 지체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(관할노동지청)</li> <li>- 3일이상의 휴업재해 발생시: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</li> </ul>	은폐: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보고: 5천만원 이하 과태료
제34조(법령요지 게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게시 (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)</li> </ul>	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7조(안전보건 표지부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,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.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* 시행규칙 별표6 참조</li> </ul>	500만원 이하과태료
제16조(관리감독자) 제17조(안전관리자) 제18조(보건관리자) 제19조(안전보건 관리담당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상시 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 규모별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정 하여 선임(대행기관 위탁 가능)</li> <li>○ 작업반장, 생산과장, 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</li> </ul>	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
제38조(안전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위험기계기구, 설비위험방지: 프레스.리프트.크레인. 등근톱 등 방호조치</li> <li>○ 전기.열. 기타에너지로 인한 위험방지 : 접지, 누전 차단기 설치 등</li> <li>○ 추락. 붕괴. 낙하.비레 위험방지: 접지, 누전차단기 설치등</li> <li>○ 굴착.하역.벌목.조작.운반.해체.중량물 취급 등 위험방지조치: 작업계획서 작성(중량물 취급, 트럭.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)</li> </ul>	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등
제39조(보건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분진. 밀폐공간작업, 사무실오염, 소음 및 진동, 이상기압, 온.습도, 방사선, 근골격계 부담작업, 화학 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</li> <li>- 방독마스크. 방진마스크, 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, 국소배기장치 설치, 휴게시설,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</li> </ul>	근로자 사망 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등
제63조(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,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</li> <li>○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</li> </ul>	500만원 이하 벌금
제66조(도급인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</li> </ul>	500만 이하 과태료
제58조(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도급작업, 수은.납.카드뮴 제련.주임.가공.가열 작업 도급금지</li> <li>○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도급금지</li> </ul>	10억원 이하 과징금
제29조(안전 보건.교육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기안전보건교육: 비사무직(6시간/분기), 사무직(3시간/분기)</li> <li>○ 채용시교육: 일용직(1시간) (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, 건설업 외(8시간))</li> <li>○ 특별교육: 일용직(2시간이상), 건설업외 (16시간이상)</li> <li>○ 관리감독자 교육: 전업, 작업 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, 연간 16시간</li> </ul>	500만원 이하 과태료

##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(개정 산안법)

산업안전보건법	주요내용	벌칙
제80조(유해, 위험 기계, 기구 등의 방호조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해, 위험 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</li> <li>- 프레스, 전단기, 가스집합용접장치, 크레인, 승강기, 리프트, 용접기, 압력용기, 보일러, 롤러기, 연삭기, 목재 가공용 등근톱, 동력시 수동대패, 산업용 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됨</li> </ul>	1년이하징역 또는 1,000만원이하 벌금
제84조(안전인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해, 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</li> <li>- 프레스, 전단기, 절곡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, 곤돌라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, 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받아야 함(사용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)</li> </ul>	3년이하징역 또는 2,000만원이하 벌금
제93조(안전검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해, 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</li> <li>프레스, 전단기, 크레인, 리프트, 압력용기, 곤돌라, 국소 배기장치, 원심기, 롤러기, 사출성형기, 고소작업대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</li> </ul>	1,000만원이하 과태료
제118조(유해, 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해 화학물질제조, 사용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</li> <li>- 디클로로벤지딘, 알파나프틸아민, 크롬산아연, 베릴륨, 비소 등 허가 대상물질</li> </ul>	5년이하징역 또는 5,000만원이하벌금
제119조(석면조사) 제122조(석면의 해체제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건축물 등 철거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</li> <li>○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해체, 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</li> <li>○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, 설비 철거시 석면 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, 해체해야 함</li> </ul>	5년이하징역 또는 5,000만원이하벌금
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, 비치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화학 물질등 사용시, 저장, 제조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게시</li> <li>○ 화학물질의 용기,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실시</li> </ul>	500만원이하 과태료
제125조(작업환경 측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음 (89dB이상), 화학물질, 분진,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</li> <li>- 반기 1회/2회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</li> </ul>	1,000만원이하과태료
제129조(일반건강진단) 제130조(특수건강진단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건강진단: 사무직은 2년회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</li> <li>○ 특수건강진단: 소음, 분진, 화학물질, 고열 등 노출근로자 (6개월 ~2년에 1회)</li> <li>○ 배치전건강진단 : 신규채용, 작업전환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</li> </ul>	1,000만원이하과태료
제64조(서류보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재해 발생기록, 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산업보건 의 선임에 관한 서류, 석면조사 서류, 작업환경측정, 건강진단 서류 등 (3~30년간 보관)</li> </ul>	300만원이하 과태료